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7월 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7월 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5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7월11일) 상정보류
- 제10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8월29일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)

□ 제안이유

- 부천시체육진흥기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의 금리인하로 인하여 체육진흥사업의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함.

□ 주요골자

- 2008년까지 기금조성 목표달성액 30억원을 50억원으로 조정함.
(안 제3조제1항)
 - 현 행 :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매년 2억원씩 10억원 추가조성
총 30억원을 조성
 - 개 정 :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~4억원씩 체육진흥기금
으로 출연하여 총 50억원으로 조성
- 체육회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사용 대상을 확대 조정함.(안 제5조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체육진흥기금이 타시군과 비교하여 적고, 이자율 격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지만, 기금사용에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“체육회운영 및 경상사업” 현행 “체육회경상운영사업”은 동일한 것이라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?</p>	<p>○ 기금 목표액은 상향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진흥사업 활성화와 예탁금의 이자수입 격감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증액하는 것이며, 기금사용에 대해서는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행 규정대로 하는 것도 바람직함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150호
의결 연월일	2003. 9. 3. (제106회)

제안년월일 : 2003년 9월 1일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에서 체육회 운영 및 경상사업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체육진흥기금 운용취지와 사용목적에 적당하지 않으므로
- 체육진흥기금조성의 취지와 사용목적에 맞게 현행의 조례대로 체육회 경상운영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

□ 주요골자

-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에서 체육회 운영 및 경상사업을 현행대로 체육회 경상운영사업으로 수정

(안 제5조2항의 3호)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(기금의 사용) 제2항 제3호중 “체육회 운영 및 경상사업”을
(현행대로하기 위하여) “체육회 경상운영사업”으로 한다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1999년 조성완료된 20억원 이외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기금을 총 30억원으로 하며, 출연금은 연도별로 균등하게 출연한다. 단,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</p> <p>② 및 ③ 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2002년 조성완료된 30억원 이외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기금을 총 50억원으로 하며, 출연금은 연도별로 균등하게 출연한다. 다만,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</p> <p>② 및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5조(기금의 사용) ① (생략)</p> <p>②기금에 의한 이자수입금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(생략) 3. <u>체육회 경상운영사업</u> 4. ~ 8.(생략) 	<p>제5조(기금의 사용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(현행과 같음) 3. <u>체육회 운영 및 경상사업</u> 4. ~ 8.(현행과 같음) 	<p>제5조(기금의 사용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기금은 2002년 조성완료된 30억원이외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기금을 총 50억원으로 하며, 출연금은 연도별 균등하게 출연한다. 다만,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1999년 조성완료된 20억원이외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기금을 총 30억원으로 하며, 출연금은 연도별로 균등하게 출연한다. 단,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2002년 조성완료된 30억원이외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기금을 총 50억원으로 하며, 출연금은 연도별 균등하게 출연한다. 다만,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